

광주지방법원 2022. 4. 21 선고 2021나624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4. 21 선고 2021나62446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0가단514444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2. 4. 7.

판결선고 2022. 4. 21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가단514444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141,348,3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41,348,3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고,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7면 7행의 “지급할 의무가 있다”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 “{관련 사건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77,2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77,200,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,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,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

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,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(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8690,8706 판결), 피고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 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여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채권자에게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익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위 115,492,562원 전액의 지급을 명한다}”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진만, 판사 유상호, 판사 송인경

별지